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검 토 보 고

《 기후위기 대응 조사·감시·평가체계 구축 등 》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6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Ⅰ. 개요 ····· 1

Ⅱ. 검토 의견 ····· 4

1. 총괄적 검토 ····· 4

가. 주요 내용 ····· 4

나. 제정안의 입법취지 ····· 8

다. 해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 사례 등 ····· 12

라. 법률 제정의 필요성 ····· 14

2. 조문별 검토 ····· 23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23

나. 기후건강관리위원회(안 제7조) ····· 33

다.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37

라. 표본감시 및 매개체감시(안 제11조 및 제12조) ····· 45

마.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50

바.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안 제17조) ····· 61

사. 취약집단 보호(안 제18조) ····· 65

아. 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와 통계의 관리(안 제19조) ····· 68

자. 중앙·지역기후보건센터 설치·운영(안 제20조 및 제21조) ····· 72

차. 기후건강연구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안 제22조 및 제23조) ····· 76

※ 참고자료 ····· 80

1. 기후위기(기후변화 포함)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와 주요 내용 ····· 80

2. 기후위기 관련 통계 ····· 81

3.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 83

Ⅰ.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3. 5.

(3) 회 부 일 : 2026. 3. 6.

2.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기후 취약집단은 건강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표본감시 및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이에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

적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취약집단 보호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등).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취약집단에 대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기후보건센터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2조).

Ⅱ. 검토 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주요 내용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기후건강관리위원회 설치,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표본감시 등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감시 및 평가, 취약집단 보호시책 마련, 정보·통계의 수집·관리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제정안은 총 2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감시·연구·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안 제1조),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두고(안 제7조),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의 기후위기 건강영향 표본감시와 감염병 매개체감시 체계 구축(안 제11조·제12조), 기상재해 등이 특정 인구집단·지역에 미치는 건강피해에 대한 역

학조사와 보건수요 파악을 위한 보건응급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등을 규정함.

아울러,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안 제17조), 취약집단에 대한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와 그에 따른 보호 시책의 수립(안 제18조),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관리(안 제19조), 중앙 및 지역 기후보건센터 설치·운영(안 제20조 및 제21조),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안 제22조), 기후보건 전문인력 양성(안 제23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

<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조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 및 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
제2조	정의	•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 • 기후보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 및 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 • 극한기온: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기온이 각각 평년 기온(기상청에서 제공하는 30년 평균 기온을 말한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상태 • 기상재해: 폭염, 한파, 태풍, 홍수, 호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 원헬스: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조	구분	주요 내용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전략 • 기후위기 건강영향: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피해 • 감시: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 평가 및 기록하고 그 결과를 배포하여 기후위기 건강영향 대비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 표본감시: 기후위기 건강영향의 조기인지 및 관리를 위하여 의과학적인 방법으로 기후변화 관련 질병을 감시하는 것 • 매개체감시: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및 매개체 내 감염병의 분포 변화와 유입에 대한 조기인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를 과학적 방법으로 감시하는 것 • 역학조사: 기상재해 또는 극한기온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기후위기 건강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건강영향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건강영향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 • 보건응급조사: 기상재해의 발생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현황과 필요한 보건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제5조	국민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영향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협조
제6조	의료인 등의 책무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에 의료 분야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기후위기 건강영향의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제7조	기후건강관리위원회	• 질병관리청장 소속 심의기구인 기후건강관리위원회 설치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기후건강관리위원회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제10조	계획수립 협조	• 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 협조 요청
제11조	표본감시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 실시 • 기후위기 건강영향 표본감시기관 지정 •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정보의 제공·공표
제12조	매개체감시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감시 실시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기관 지정 •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정보의 제공·공표

조	구분	주요 내용
제13조	역학조사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기상재해 등으로 특정 인구집단·지역에서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 •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 등으로서 기후위기 건강영향 역학조사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
제14조	보건응급 조사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재해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와 보건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응급조사 실시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등	•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1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
제17조	기후보건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제18조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	•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에 대하여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제19조	정보와 통계 관리	•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 • 건강영향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20조 ·제21조	기후보건 센터	•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기후보건센터 설치・운영 •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보건센터 설치・운영
제22조	기후건강 연구사업	•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그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실시
제23조	전문인력 양성·지원	•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24조	위임 및 위탁	•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질병관리청장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
제25조	비용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표본감시 및 매개체감시에 드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 이 법에 따른 종사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업무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제28조	벌칙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그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나. 제정안의 입법취지

□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는 2025년을 대형 산불,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해로 기술하고 있음.

○ 2025년 3월(21일~26일)에는 역대 가장 높은 전국 평균기온(14.2℃)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평년 대비 14%p 가량 낮은 상대습도 및 강풍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5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총 105,084.33ha(축구장 147,100개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로 기록됨.

< 2025년 3월 21~26일 평균기온·강수량·상대습도·최대풍속 값, 평년 대비 차이, 1973년 이래 순위 >

	평균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최대풍속		
	평균기온	평년 편차	상위 순위	강수량	평년비	하위 순위	상대습도	평년 편차	하위 순위	최대풍속	평년 편차	상위 순위
전국	14.2℃	+7.1℃	1위	0.2mm	0.9%	6위	52%	-7%p	7위	-	-	-
경북	15.5℃	+8.1℃	1위	0.0mm	0.0%	1위	42%	-14%p	3위	-	-	-
의성	14.5℃	+8.1℃	1위	0.0mm	0.0%	1위	46%	-13%p	3위	5.9m/s	+1.3m/s	6위

자료: 2025 이상기후 보고서

○ 여기에 더해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이 25.7℃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서울 열대야 일수(46일)는 평년(12.5일) 대비 3.5배를 넘었고, 구미(55일), 전주(45일) 등 20개 지점에서는 관측 이래 최다 폭염 일수를 기록함.

○ 또한, 연간 강수량은 1325.6mm로 평년과 비슷했으나 장마 기간이

짧고 무더위가 지속된 가운데 강수가 주로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15개 지점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강원 영동지역은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을 겪었음.

< 1시간 최다강수량 100mm이상 발생 사례 >

날짜	지점명	1시간최대강수량	날짜	지점명	1시간최대강수량
7.17.	서산(충남 서산시)	114.9㎜	8.13.	덕적북리(인천 옹진군)	149.2㎜
	단성(경남 산청군)	101.0㎜		김포공항(서울 강서구)	118.0㎜
7.20.	내촌면(경기 포천시)	104.0㎜		주교(경기 고양시)	105.0㎜
	가평조종(경기 가평군)	104.5㎜		은평(서울 은평구)	103.5㎜
8.3.	함평(전남 함평군)	147.5㎜		김포(경기 김포시)	101.5㎜
	무안공항(전남 무안군)	142.1㎜	9.7.	군산(전북 군산시)	152.2㎜
	무안(전남 무안군)	122.0㎜		서천(충남 서천군)	137.0㎜
	운남(전남 무안군)	110.5㎜			

자료: 2025 이상기후 보고서

○ 한편,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은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기온이 1.44℃ 상승했고, 특히 지난 3년(2023~2025년)은 역대 가장 더웠던 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상기후[1]가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도 기후변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신체적·정신

1)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산불로 기록된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형 산불(1월), 3.92m의 기록적인 적설량을 기록한 일본의 폭설(2월), 극한 강수 발생으로 국가적 재정 부담이 가중된 파키스탄 홍수(6월~7월) 등

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기후위기(변화)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등의 증가,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와 같은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심혈관·호흡기질환 악화, 식수·식량 안전 위협, 감염병 유행지역 확대, 정신건강 피해와 같은 간접적 영향 등 다층적 경로를 통해 국민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됨.

○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기온상승 및 폭염에 의한 열 스트레스는 생리적 반응을 손상시켜 온열질환과 같은 급성 병리학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고, 탈수나 혈전 형성을 유발하여 심뇌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위해 세균·기생충에 의한 식중독 환자의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음.[2)]

○ 또한, 집중호우와 같은 극단적 기상재해는 재산 및 인명피해 증가로 이어져 2016~2019년 동안 연평균 재산 피해액은 약 2,080억 원, 사망·실종자는 평균 29.3명, 이재민은 약 6,140명 수준이었으나, 2020~2023년에는 재산 피해액이 연평균 약 7,338억 원, 사망·실종자 73.5명, 이재민 약 20,541명으로 각각 3.5배,

2) 2025년 우리나라에서 100명 이상의 대형 식중독 발생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온열질환 환자 수도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5월~9월) 동안 전년(3,704명) 대비 20.4% 증가한 4,460명(사망 29명)이 발생하였음.

2.5배, 3.3배 이상 증가하였고[3], 2025년에는 집중호우에 의해서만 총 25명의 인명피해와 1조 1,307억원의 재산피해(최근 5년 평균의 1.8배)가 발생하였음.

○ 아울러 기후 온난화는 병원체와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의 서식 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켜 매개체 전파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지카, 쯔쯔가무시 등)과 수인성 감염병 유행지역을 확대시키고 있음.[4]

○ 그 밖에도 기후변화는 오존 농도 증가에 따른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 반복된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불안 가중 등 정신건강에 대한 위해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공중보건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강관리 체계 전반(예방, 치료, 재난대응)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보건정책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제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3) 환경부·국립과학원,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기후위기 영향 및 적응-」p.30

4) 최근 3년 동안 쯔쯔가무시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6~2019년 연평균 11명에서 2020~2023년 연평균 14.25명으로 증가하였고, 말라리아 국내 연평균 환자 수는 2016~2019년 310명에서 2020~2023년 370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2023년에는 673명으로 급증하였음.(환경부·국립과학원, 위의 자료, p.31)

다. 해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 사례 등

□ 기후위기 대응 관련 해외 사례를 보면 먼저, 일본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계획, 기후변화 적응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법을 201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독일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적응을 최초로 법제화한 연방 기후변화 적응법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생명·건강, 사회·경제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연방, 주·지방정부 수준에서 기후적응을 법적 의무화하고, 사전 예방적 기후적응 전략 수립 의무, 기후위험 분석 및 정보 수집,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기반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기후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에게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국가전략 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건강보호 및 촉진법안」이 2025년 7월 하원에서 발의된 바 있음.

○ 영국은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문화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근거하여 기후변화가 영국에 미칠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차원의

법정 평가(CCRA,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 비교 >

구분	일본	독일
법률명	· **기후변화 적응법**('18.12.1. 시행)	· **연방 기후변화적응법**('24.7.1. 시행)
제정 목적	- 완화와 적응은 목적 및 주요 정책이 상이 - 기후위기 피해가 점차 확대되므로 별도 법률 제정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 사회문화, 경제의 별도 보호법익의 마련을 위해 제정
주요 내용	- 기후변화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 - 기후영향평가보고서 작성(5년) 및 공표 - 적응성과 파악, 평가기법 개발	- 기후위험 분석·결과 발표(10년) - 기후변화결과 모니터링보고서(4년) - 측정가능한 목표를 포함한 적응전략 수립
조문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노력) 제6조(국민의 노력) **제2장 기후변화적응 계획** 제7조(기후변화적응 계획의 책정) 제8조(기후변화적응 계획의 변경) 제9조(평가방법 등의 개발) 제10조(기후변화 영향의 평가) **제3장 기후변화적응의 추진** 제11조(연구소의 기후변화적응 추진에 관한 업무) 제12조(지역 기후변화적응 계획) 제13조(지역 기후변화적응센터) 제14조(기후변화적응광역협의회) 제15조(관련 시책과의 연계) **제4장 보칙** 제16조(관측 등의 추진) 제17조(사업자 및 국민의 이해 추진) 제18조(국제 협력 추진) 제19조(국가의 원조) 제20조(관련 행정기관 등의 협력) **부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법의 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연방에 의한 기후변화 적응** 제3조(사전 예방적 기후변화적응전략) 제4조(기후위험분석: 정보수집) 제5조(감시 목표 미달성 시 재조정) 제6조(연방차원에서의 기후변화적응) 제7조(연방자산(국유지)의 기후변화에의 적응) **제3장 고려요건** 제8조 고려요건 **제4장 주의 기후변화적응** 제9조 연방과 주의 협력 제10조 주의 기후변화적응 제11조 주의 보고 제12조 기후변화적응계획 **제5장 종결규정** 제13조 종결규정 제14조 효력의 개시 **부칙**

자료: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2025.9.)

라. 법률 제정의 필요성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야는 타 적응 분야와 달리 단일 부문 내에서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며,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 기후위기 대응 관련 현행 법령의 현황을 보면 환경·기후 분야의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이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의 관측·감시·예측 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영향 관련 사항은 제한적임.

○ 보건 분야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은 특정 질환 발생 후의 치료와 차단 또는 특정 건강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개별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 강구,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그 전담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으나 기후보건 업무 전반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바,

현행 개별 법령 체계하에서는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에 선제적·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현재 기후위기 감시체계와 관련하여 감염병 표본감시 및 전수감시는 질병관리청이, 폭염 및 기상특보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이, 대기오염 측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소관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후데이터와 환경데이터 및 질병데이터가 각각 분절되어 있어 기후위기가 건강영향으로 이어지는 상관관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응하는 통합감시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더욱이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결합하여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맞춤형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예방·감시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기후위기를 공중보건의 의제로 제도화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방·감시·적응 중심의 통합적 대응체계 및 의료인프라 구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현재 관련 부처가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행정안전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과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안부확인,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고위험군 특별관리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석탄 감축 등 탈탄소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수예보 체계 고도화 및 극한호우 대비 홍수 방어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기상청은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 ① 재난성 폭염·호우 대비체계 강화, ② 관측 및 예측 기반의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서비

스 제공, ③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제공, ④ 기상·기후 AI 대전환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은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분야 대비·대응을 위한 『제1차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고,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열·한랭 응급실 감시[5] 및 감염병 감시체계[6]를 운영 중에 있음.

< 부처별 기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예시 >

부처	정책 추진 현황 예시
행정안전부	•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계획 수립·시행 • 재생에너지 확대·석탄 감축 등 탈탄소 정책 수립·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수예보체계 고도화 • 극한호우 대비 홍수 방어망 구축 등
기상청	• 재난성 폭염·호우 대비 체계 강화 • 관측 및 예측 기반의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 •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제공 • 기상·기후 AI 전환 등
질병관리청	• 제1차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 •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 온열·한랭 응급실 감시 • 기후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등
해양수산부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위한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마련 추진 중
농촌진흥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실시(5년 주기) • 자체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자료 : 질병관리청 자료 등 재구성

5) 전국 응급실(약 500개) 중심으로 온열·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일일 통계 공개 등

6) 감염병 전수감시, 장관감염증 감시 및 기후변화 대비 매개체 감시·분석 등

○ 또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분야별 법정계획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및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등이 각각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기후건강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실시, 취약계층 보호 시책 마련, 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 감염병 매개체 감시 및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개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방식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으로,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관련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 회복력 증진, 적응정보 공개 및 활용 등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92) 등[7]이 발의되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임.

---

7) 동 제정안 외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69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716)이 발의됨.

<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

구분	주체	내용	법조항
감시·예측	기상청 등	· 적응정보 생산시 탄녹법 37조1항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활용	제7조(2항)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정부 (소관부처)	· 부문·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 산업단지 및 공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제8조
기후위험 평가	환경부	· 기후위험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5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적응대책에 반영 · 국토계획, 중·장기 행정계획 등에 반영 · 탄녹법 제42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반영	제9조
회복력 증진	지자체 (환경부)	·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및 환경부 제출(지자체) · 탄녹법 제42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반영 · 기후보험 및 기후공시 지원	제14조 제15·16조
적응정보 공개·활용	환경부 (정보관리원)	· 적응정보 수집·관리, 국민공개, 기후위기 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원 설치·운영 · 기후위험지도 작성·보급 · 적응지표 개발·보급 및 적응진척도 점검(2년)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기타	환경부 (관계부처)	·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연구지원,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등	제17~20조

자료: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2025.9.)

○ 동 법률안들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률안들의 심의 결과와도 연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질병

관리청이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극한기온, 기상재해, 감염병, 대기오염 등으로 다양하여, 그 경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 행정안전부(극한기온, 기상재해), 기상청(기후변화 감시·예측), 농림축산식품부(식량안보와 영양 불균형)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업수행체계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과 함께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보완 가능성 및 관련 법률안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 제정안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보건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보건복지부는 기후위기 대응 건강정책의 총괄적·기본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8]에 두고, 제정안은 이를 구체화화는 건강영

---

8)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향 감시·평가 및 적응대책의 근거법으로 규율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며, 제정안의 제명은 건강증진·질병관리 등 건강정책 전반을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기존 법률과 규율 범위가 중복되어 소관·관계부처 간 역할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명을 조정하고 조문 체계도 이에 맞추어 정비[9]할 필요 등이 있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등 의견 >

기관명	제정안에 대한 의견
질병관리청	ㅇ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후보건 관련 법률 제정 필요
보건복지부	ㅇ 보건복지부는 기후위기 대응 건강정책의 총괄적·기본적 근거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두고, 제정안은 이를 구체화화는 건강영향 감시·평가 및 적응대책의 근거법으로 규율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며, 제정안의 제명은 건강증진·질병관리 등 건강정책 전반을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기존 법률과 규율 범위가 중복되어 소관·관계부처 간 역할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명을 조정하고 조문 체계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 등이 있음

9) 보건복지부 수정의견

제정안	보건복지부 수정의견
기후위기 <u>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u>	기후위기 <u>건강영향 평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u>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u>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u>건강영향을 조사·감시·평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u>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u>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37조의3 및 제37조의3을</u> 각각 삭제한다.

기관명	제정안에 대한 의견
행정안전부	ㅇ ‘기후건강관리위원회’ 업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할 필요
기상청	ㅇ 안 제2조제4호의 “극한기온”의 정의는 법 제정 취지에 따르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조제9호에서 정의된 ‘이상기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 ㅇ 안 제2조제5호의 ‘기상재해’는 각 조문의 문맥상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용되므로 ‘재난’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상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기상재난을 정의(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ㅇ 안 제9조의 세부이행계획의 수립과 점검은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심의·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인사혁신처	ㅇ 안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력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인력파견은 기관의 균형적·효율적 인력 활용, 파견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방의 파견요청에 따라 파견을 강제하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 저해 등 인사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음
개인정보위원회	ㅇ 안 제19조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와 관련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으므로 중복입법으로 인한 법률간 충돌, 이종 분야간 결합시 적용규정 혼란이 우려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고 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필요
법무부	ㅇ 안 제27조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에 있어 금지규정인 제정안 제27조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조항인 제정안 제28조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규정되어 있어 호응의 제고를 위해 보완 검토 필요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안 제1조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보건”,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및 “기후위기 건강영향”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두며, 안 제3조는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하여 제정안에 기본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과 의료인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 및 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3. “기후보건”이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 및 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극한기온”이란 여름철(6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겨울철(12월부터 2월까지를 말한다)의 기온이 각각 평년 기온(기상청에서 제공하는 30년 평균 기온을 말한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상태를 말한다. 5. “기상재해”란 폭염, 한파, 태풍, 홍수, 호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을 말한다. 6.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헬스”란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전략을 말한다.

9. “기후위기 건강영향”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피해를 말한다.
10. “감시”란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 평가 및 기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기후위기 건강영향 대비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1. “표본감시”란 기후위기 건강영향의 조기인지 및 관리를 위하여 의과학적인 방법으로 기후변화 관련 질병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매개체감시”란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및 매개체 내 감염병의 분포 변화와 유입에 대한 조기인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를 과학적 방법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역학조사”란 기상재해 또는 극한기온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기후위기 건강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건강영향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건강영향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4. “보건응급조사”란 기상재해의 발생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현황과 필요한 보건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영향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에 의료분야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기후위기 건강영향의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기후위기)** 안 제2조제1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기후변화를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음.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

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임. 즉,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기후체계 변화라는 자연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후위기"의 정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함.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안과 동일하게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각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참고로, "기후위기(climate crisis)"는 2004년에 설립된 "기후위기연합(Climate Crisis Coalition)"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에 개최된 '기후 취약성 모니터단(the Climate Vulnerability Monitor)' 출범식에서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몰디브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기후체계 변화라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인데 비해, "기후위기"는 지구가 직면한 위협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정체되어 있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행동 변화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10)]

□ **(극한기온)** 안 제2조제4호는 “극한기온”을 ‘여름철(6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겨울철(12월부터 2월까지를 말한다)의 기온이 각각 평년 기온(기상청에서 제공하는 30년 평균 기온을 말한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 제정안과 같이 규정하게 되면 “극한기온”이 특정 해의 여름철과 겨울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름철과 겨울철 중 특정 일 또는 특정 기간의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한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는 “이상기후”를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따른 “극한기온” 용어 대신 “이상기후”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상청도 이에 대해 동일한 의견인 것으로 확인됨.

□ **(기상재해)** 안 제2조제5호는 “기상재해”를 ‘폭염, 한파, 태풍, 홍수, 호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

10) 이동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2.12.30., p.2-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11]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음. 동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중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는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 제정안이 정의하는 “기상재해”는 피해의 의미보다는 피해를 야기하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재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 기상청은 안 제2조제5호의 ‘기상재해’는 각 조문의 문맥상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용되므로 ‘재난’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상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기상재난을 정의(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생략)
다. 삭제

제1호의 재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안 제2조제6호는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을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 정의에서 신종감염병은 제외되는바, 질병관리청은 동 정의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은 기후요인에 따라 발생 양상이나 유행이 변화하는 기존 감염병을 전제로 하고,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 단계에서 기후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질병의 특성이 비정형적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신종감염병은 제정안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지정 및 긴급대응 체계를 통해 관리된다는 의견임.

□ **(원헬스)** 안 제2조제8호는 "원헬스"[12]를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전략'으로 정의하고 있음. 안 제8조제3항제4호에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원헬스 기반 협업'에서만 "원헬스"를 제시하고 있음. 동법안에서 "원헬스"라는 용어

12) "원헬스"의 개념은 2026년 6월 24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34호 「감염병예방법」 제7조제2항제2호의3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및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접근·협업 방안'으로 개념이 규정되어 있음.

가 사용되는 유일한 규정임.

○ 따라서 안 제8조제3항제4호를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범부처·다분야·다학제 협업”으로 수정하는 대신 제정안에서는 별도로 “원헬스”의 정의를 둘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기후위기 건강영향)** 안 제2조제9호는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 ‘기후위기 건강피해[13]’라는 용어의 경우 기후위기가 건강피해라는 부정적인 결론으로 귀결되는 반면, ‘기후위기 건강영향[14]’은 건강피해를 확정하기 전 건강에 대한 분석·평가, 관리·적응 등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피해’ 대신 ‘건강영향’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강피해의 예시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및 참족병 등), 매개체

---

13) ‘건강피해’는 어떤 원인에 노출된 개인·집단에게 나타난 신체·정신상 초래된 부정적인 결과로 구체적인 손실 지표 개념임 〔(예시) ‘혈중 코르티졸’ 농도가 기준치 이상 높은 군을 10년 장기 추적 결과 비교군 대비 ‘암발생 및 사망 비율’이 높았을 때, (만성질환, 장애)암발생 및 사망·후유증 등은 ‘건강피해’에 해당〕

14) ‘건강영향’은 어떤 요인이 개인·집단의 신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이르는 용어로 보건분야에서는 주로 ‘원인’에 대응한 포괄적인 반응을 뜻함 〔 (예시) 어떤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조사에서 ‘혈중 코르티졸’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

전파 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쯔쯔가무시증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콜레라, 살모넬라, 장티푸스, 비브리오, 노로바이러스 등), 호흡기질환(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능 저하, 알레르기 악화 등) 등이 있음.

□ **(매개체감시)** 안 제2조제12호는 "매개체감시"를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및 매개체 내 감염병의 분포 변화와 유입에 대한 조기인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를 과학적 방법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 정의에서 '매개체 내 감염병의 분포' 문구와 관련하여, 감염병 매개체란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전파하는 매개 생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매개체 내 감염병의 분포'를 '매개체 내 병원체의 분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매개체감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인 안 제12조제2항[15]은 '매개체 내 병원체의 분포'로 규정하고 있음.

□ **(역학조사)** 안 제2조제13호는 "역학조사"를 '기상재해 또는 극한 기온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기후위기 건강영향

15)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12조(매개체 감시)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 및 <u>매개체 내 병원체 분석</u>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기관(이하 "매개체감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건강영향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건강영향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런데 제정안은 제2조제14호의 "보건응급조사"와 제13조제1항[16]의 역학조사의 요건을 각각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건강피해"는 어떤 원인에 노출된 개인·집단에게 나타난 신체·정신상 초래된 부정적인 결과로 구체적인 손실 지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17], "건강영향"은 어떤 요인이 개인·집단의 신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이르는 용어로 보건분야에서는 주로 '원인'에 대응한 포괄적인 반응을 뜻하는 것[18]이라는 점에서, 역학조사의 정의에서 "건강영향"을 "건강피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는 "역학조사"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

16)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13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재해 또는 극한기온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7) (예시) '혈중 코르티졸' 농도가 기준치 이상 높은 군을 10년 장기 추적 결과 비교군 대비 '암발생 및 사망 비율'이 높았을 때, (만성질환, 장애)암발생 및 사망·후유증 등은 '건강피해'에 해당

18) (예시) 어떤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조사에서 '혈중 코르티졸'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의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를 '기후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5조 국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 중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영향'을 정의 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건강영향'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기후건강관리위원회(안 제7조)

□ 안 제7조는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7조(기후건강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기후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기후 및 건강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3. 그 밖에 기후건강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기상, 환경, 산업, 보건이 모두 연계된 복합적 문제로 종합적인 기후보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부처 협력 및 민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법률로 규정된 5개의 정부위원회가 있음.

< 질병관리청 소속 정부위원회 >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주요업무
감염병 관리위원회	감염병예방법 제9조, 제10조	위원장(질병관리청장) 포함 28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병원체자원 심의위원회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위원장(질병관리청 차장) 포함 15명	- 병원체자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현황조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등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
국가손상 관리위원회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장(질병관리청장) 포함 15명	-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원장(질병관리청장이 임명) 포함 1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위원장(질병관리청장이 임명) 포함 1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재심의

자료 : 질병관리청

○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는 병원체자원 관리·분양·연구·활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외인성 손상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존 정부위원회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는 기후위기(변화)라는 포괄적인 문제에 기반한 건강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종

합·예방·적응 전략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안과 같이 다부처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19]가 설치·운영 중이고, 동 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므로,[20]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제도와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제

---

19)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는 기후변화 정책분과위원회,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위원회,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20)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생략)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⑤ ~ ⑨ (생략)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⑤ (생략)

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은 법률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장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기후건강관리위원회' 업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기후건강관리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16조[21]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고 있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유사·중복되고 동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임.

---

21) 「탄소중립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안 제8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기후위기 건강영향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9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면 기후건강관리위원회가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안 제10조는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기후 취약집단 보호 4.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원헬스 기반 협업 5.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연구 및 개발 6.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국제협력 7. 전문인력양성 및 적응역량강화 8.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지식보급 및 건강수칙 홍보 등 인식확산 9. 그 밖에 기후위기에 따른 국민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영향은 조사·감시·평가·취약집단 보호 등 보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별도의 보건분야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현재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정계획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등이 있음.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8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22]는 동 계획에 기후변화의

22)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정부는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동 계획에는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건강부문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질병관리청)', '기후위기 기인 감염병 기술개발 및 대응체계 구축(질병관리청, 환경부)' 등 건강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중 건강 관련 사항 >

국가전략	국가 기본계획 추진과제	주요내용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2-3. 기후위기를 극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2-3-1.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 건강부문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질병청) - 기후위기 기인 감염병 기술개발 및 대응 체계 구축(질병청, 환경부)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38조[23]에 따라 관계부처[24]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3) 「탄소중립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합동(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은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전략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동 계획에는 '기후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기후적응 역량 강화', '폭염·한파 대응체계 강화', '이상기후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등이 건강 관련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음.

<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중 건강 관련 사항 >

전략	세부추진과제	주요 내용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V-2)	맞춤형 기후회복 안전망 구축 (2-2)	1. 기후 취약계층·지역 기후적응 역량 강화 - 맞춤형 지원 강화 - 환경개선 지원 - 에너지 부담 경감 2. 폭염·한파 대응체계 강화 - 국민 생활공간의 기후적응시설 확대 - 폭염·한파 대비 건강영향 감시 체계 운영 3.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체계 구축 - 건강 민감계층 보호사업 다각화 -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대응체계 강화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관계부처[25] 공동(기상청 주관)으로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로 기후변화 진단과 분석을 위한 감시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한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 강화, 선제적

24) 기후에너지환경부(주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총 18개 관계부처 합동

25) 기상청(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기후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시·예측 정보 공동활용 및 서비스 확대 등이 선정됨.

□ 위 법정계획 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6]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 등 부문별 감축목표와 각 부문의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계획 및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고 건강 관련 사항은 적응분야의 일부로 다루고 있어, 동 계획으로는 제정안이 종합계획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안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국토 공간 전반의 기후회복력 제고와 사회 전부문 기후안전망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건정책의 구조적 재설계를 위한 사항은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질병관리청은 기후회복력 증진을 위해 감시·대응체계 및

[26] 2030 NDC : '30년까지 '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21.12월 UN 제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년 『기후보건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동 계획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은 아님.

<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전략 및 주요 내용 >

추진 전략	주요 내용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폭염·한파대비 감시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등 감시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기후보건 취약집단 건강보호, 이상기후 건강영향 대비체계 마련 및 국외 질병 유행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민·관협력 체계 강화, 감염병 및 보건분야 국가간 협력 및 기후보건 인식제고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도·교육, 검사·조사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	건강취약성 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 및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 및 활용성 강화

자료 : 질병관리청

□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취약집단 보호 및 관련 연구·개발 등 국민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존 법정계획이 담아내지 못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보건의료계획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9조에 따르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주체에서 질병관리청은 제외되는바, 질병관리청은 기후위기 건강관리 업무의 주무 부처이고, 안 제21조제1항[27]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시행계획

27)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21조(지역기후보건센터) ①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의 수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제정안의 종합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및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의 하위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므로,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계획 수립·시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계 방안 및 환류 체계를 사전에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중 건강 관련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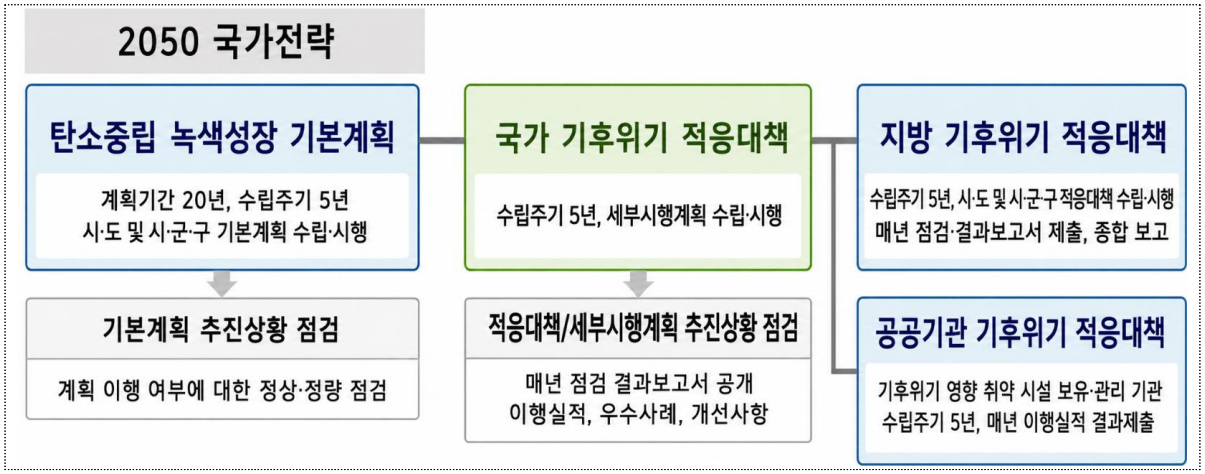

자료: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 보건복지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구역 내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관할 구역 내 기후위기 건강영향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4.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교육·홍보
5. 보건응급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상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건강 보호 대책을 포함하기 위해 범부처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제정안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감시·평가 등 과학적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이므로 종합계획 명칭을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28]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는 안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심의·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종합계획의 과제별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주체를 기후건강관리위원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28) 보건복지부 수정의견

제정안	보건복지부 수정의견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건강영향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 표본감시 및 매개체감시(안 제11조 및 제12조)

□ 안 제11조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감시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매개체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조(표본감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위기 건강영향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기후위기 건강영향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후위기 건강영향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제공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매개체 감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 및 매개체 내 병원체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기관(이하 "매개체감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개체감시기관의 장에게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개체감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제공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개체 감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체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매개체감시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에 따른 '표본감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해 질병여부 등을 의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개체감시'는 기후위기에 따른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의 발생과 분포 및 병원체 감염 변화 등을 의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질병관리청은 현재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임.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통해 2011년부터 여름철(5월~9월) 온열질환[29] 내원현황과 2013년부터 겨울철(12월~2월) 한랭질환[30] 내원현황에 대한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 시 각 지자체 등에서 현황자료로 활용하는 등 관련 부처가 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 활용 현황 >

부 처	내 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 폭염 대응 TF 등에 감시체계 현황 자료 보고
행정안전부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 시 각 지자체 등에서 현황 자료로 활용
고용노동부	야외근로자 건강관리대책 및 작업시간 변경 지도 등 관련 사업 활용
농촌진흥청	폭염대비 농업인 및 고령층 어르신 보호 대책 및 피해예방사업 활용
기상청	이상기후 보고서* 건강영향 분야 데이터로 활용 * 이상기후 현상 및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매년 발간)
지자체	폭염·한파 예방대책 및 취약계층 보호활동 근거자료로 활용

자료 : 질병관리청

29)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열부종 등

30)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침족병 등

○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6년의 경우 3월 16일부터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3~10월)를 시작으로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3~10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4~10월)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4~10월)를 시행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은 감시사업을 통해 확인한 모기 발생 변화 및 병원체 검출 결과 등을 일본뇌염·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에 활용하고 감시 결과는 국민에게도 제공할 예정임.

< 2026년 매개모기 감시사업 현황 >

사업명	대상 모기종	감시 내용	감시 지점(개) (전년대비 증감 수)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	작은빨간집모기	일본뇌염 발생 예방·관리를 위한 매개모기 밀도 및 병원체 감시	64(-)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	얼룩날개모기류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한 매개체 및 병원체 감시	88(↑1)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사업	흰줄숲모기, 빨간집모기 등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주요 매개체 및 병원체 감시	65(-)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	이집트숲모기 등	해외 유입 매개체 감시	53(↑13)

자료 : 질병관리청

□ 현재 질병관리청이 수행하고 있는 온열·한랭질환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기후·건강 통합 감시체계의 확장 구축뿐만 아니라 특정 취약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의 조기 출현 및 서식지 확대, 해외유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역 단계

에서 생태적 환경 특성에 기반한 매개체 유입-정착-확산 경로에 대한 감시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표본감시와 매개체감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더욱이 현행 「감염병예방법」[31]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은 감염병으로 한정되어 있고,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아닌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무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과 같이 표본감시와 매개체감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감시체계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표본감시 및

---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감염병 매개체감시와 제정안에 따른 표본감시 및 감염병 매개체 감시로 운영될 경우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정 건강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피해가 기후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후변화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성, 건강피해의 범위 등에 대해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안 제13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상재해 등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지역에서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기상재해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와 보건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역학조사와 보건응급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13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재해 또는 극한기온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역학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건응급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재해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와 보건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응급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등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를 마친 때에는 기후위기 건강영향 및 보건수요의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 결과에 따라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정안에 따른 역학조사는 특정 인구집단 내 발생한 질병 또는 건강문제의 원인 및 위험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보건응급조사는 기후재난 발생 후 최단기간 내 건강상태 및 보건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조사는 조사 목적·시점·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역학조사와 보건응급조사 비교 >

구분	역학조사	보건응급조사
주요 목적	ㅇ특정 인구집단 내 발생한 질병 또는 건강 문제의 **원인 및 위험요인 규명**	ㅇ기후재난 발생 후 **최단기간 내 건강상태 및 보건수요 파악**
조사 시점	ㅇ기상재해 또는 극한기온으로 건강 피해 발생 후 또는 이상징후 포착 시	ㅇ기후재난 발생 직후
조사 대상	ㅇ질환자, 특정 위험 노출군 등	ㅇ임시주거시설 내 이재민 전수(개인)
조사 기한	ㅇ정밀 분석을 위해 일정 기간 소요	ㅇ기후재난 발생 시, 최단기간 내 조사 착수 권고
핵심 내용	ㅇ노출 경로·요인, 발병률 분석 등	ㅇ건강상태 및 보건의료 수요 파악 - 급성 손상, 감염병 증상, 약물 중단, 급성 스트레스 등
결과 활용	ㅇ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전략 수립	ㅇ단기 건강영향을 파악하여 구호물자 및 의료 지원 등 조기 대응 ㅇ공중보건 대책 수립, 의료지원 연계, 보건 위험 조기 인지 및 대응계획 마련

자료 : 질병관리청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①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②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32] 동 역학조사의 대상은 감염병으로 한정됨.

○ 「환경보건법」 제15조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등으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환경유해인자(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규모 파악 등이 주목적임.[33]

---

32)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33)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

○ 이에 비해 제정안에 따른 역학조사[34]는 기상재해 또는 극한기온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기후위기 건강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건강영향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건강영향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와는 그 목적과 내용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환경보건법」 및 제정안의 역학조사 비교 >

구분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내용
「감염병예방법」	감염병 원인-경로 규명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장소·시설	ㅇ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 ㅇ 감염원 추적 ㅇ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ㅇ 감염병 여부 불분명하나 감염병 발병 원인 규명
「환경보건법」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원인 규명	건강피해 발생 우려지역주민등	ㅇ 질환·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 파악 ㅇ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 확인
제정안	기후위기 건강영향 발생 원인 규명	기상재해 노출 집단, 지역	ㅇ 건강영향의 발생 현황 파악 ㅇ 기후위기와 건강영향 사이의 상관관계 확인

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4)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역학조사"란 기상재해 또는 극한기온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기후위기 건강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건강영향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건강영향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정안에 따른 “기후위기 건강영향”[35]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피해를 의미함.

○ 기후위기 건강영향에는 감염병에 의한 건강피해 외에도 열사병, 외상, 호흡기 손상 등 기상재해에 의한 건강피해뿐만 아니라 천식, 폐기능 저하 등 환경성질환과 재난 후 PTSD, 우울·불안과 같은 정신건강피해 및 취약집단 건강불평등 확대 등 다양한 유형의 건강피해가 포함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라 기후위기 건강영향 발생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신설하는 경우, 기후변화 관련 비감염성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집단·지역 단위로 기후요인과 건강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장기적·통계적·공간적 분석기법으로 규명하여 그 결과를 기후위기 건강영향의 예방·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규정 실익이 있다고 보임.

○ 특히 기후위기 건강영향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36] 제정안에 따른 역학조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별 감염

35)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후위기 건강영향”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피해를 말한다.

36) 폭염일수나 열대야 및 강수량 변화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도시 열섬 현상은 대도시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산불·홍수·가뭄 등은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기후위기 건강피해는 생물학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집중됨.

사건 또는 집단발병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역학조사와는 달리 특정 인구집단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안 제13조는 제2항에서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후보건의 측면에서 기후재난 등의 상황으로 감염병 외의 건강피해 발생 시 필요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제정안을 통해 감염병예방법과 별도로 기후보건 영역의 역학조사관을 규정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기후보건 영역의 역학조사관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제정안의 역학조사는 기온·습도·미세먼지 등 기후·환경데이터(기상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와 일별 질환 발병자 수나 응급실 방문자 수 등 질병데이터를 연계하는 단기적인 시계열 분석 방법이 활용될 수 있고, 특정 지역·계층을 장기간 추적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악화 여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방법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감염병예방법」과의 체계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기후위기 건강영향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목적 및 적용 범위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정안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인 건강영향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포함되는바, 감염병 발생은 동시에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법률의 적용 영역이 중첩될 소지가 있음.

○ 이로 인해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 또는 집단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감염병이 기후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해외유입 등 비기후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법 적용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률간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안과 「감염병예방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염병예방법」[37]은 신속한 감염 원인 및 경로 규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 금지와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정안의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제정안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7) 「감염병예방법」

□ 다음으로, 안 제15조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 발령 시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관계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과[38] 유사한 규정형식임.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4가 자료제출 요구를 구분하여 규정한 목적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요구(제1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법인·

---

38)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체나 개인 등에게도 요구(제2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39]

○ 「감염병예방법」은 이와 함께 재난상황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제4항에서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금지 규정을 두고 위반 시 제79조의2제1호에 근거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 제15조도 「감염병예방법」과 동일한 취지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예방법」과 달리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는 제정안에 따른 역학조사가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권고 및 지원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40]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정안이 재난상황에서 역학조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

---

39) 2021년 1월 수원지방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인 이만희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②형벌법규의 의미를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③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해당 여부와 무관한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이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만희 피고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역학조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0고합496).

40) 「감염병예방법」은 제18조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9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 「감염병예방법」과 동일하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5조제2항은 그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제정안은 역학조사와 보건응급조사의 주체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15조제1항에서 역학조사와 보건응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은 재난 상황 시 자료제출 요구 대상을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염병예방법」과 동일하게 "법인·단체·개인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안 제2조제9호는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중략)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피해'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13호는 역학조사를 "기후위기 건강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3조는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위해 자구 정리가 필요하고,

또한, 안 제2조에서 "역학조사"와 "보건응급조사"를 각각 정의하면서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역학조사와 보건응급조사의 해당 조문 번호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법제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6조제2항에서 협조 요청의 목적으로 '예방' 외 '관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사혁신처는 질병관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5조제3항[41]에 대하여 '파견'은 기관의 균형적·효율적 인력 활용, 파견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관의 인사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방의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을 강제하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 저해 등 인사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인사혁신처의 인력 운영 정책에 따라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력 파견 요청 규정 삭제를 수용한다는 입장임.

41) 참고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4제3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7조(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에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유형, 특성 및 추이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7조의3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변화

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2]

○ 이를 근거로 질병관리청은 2021년 3개 영역(기온, 대기질, 감염병), 31개 지표(영역별 감시지표[43]와 추산지표[44])에 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2022년에 발표하였고,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평가 범위를 4개 평가영역(3개+산불·홍수 등 기후재난 영역 추가), 77개 지표(만성

---

42)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표본감시 또는 전수감시에 해당하는 자료원에서 특정질환의 대상자 수를 집계하는 방법

44) 통계적 모델링을 통해서 해당 노출로 인한 초과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방법

질환, 정신질환 관련 지표 신설 등)로 확대하고 미래 기후보건 정책 대응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예측(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부담 등)과 기후민감집단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도입하여 2026년에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제2항을 근거로 5년 주기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기후보건 인식도 조사(기후변화와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수준, 정보이해도, 정책 수용도)를 실시할 예정임.

○ 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의 기후보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안 부칙[45]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참고로, 「환경보건법」 제13조[46]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

---

45)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6)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향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와는 차이가 있음.

사. 취약집단 보호(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 취약집단과 보건의료 접근 취약집단에 대하여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8조(취약집단에 대한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이하 "취약집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기후위기 대응 취약집단 2. 지리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접근 취약집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결합하여 생물학적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기저질환자 등)과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및 취약지역(상습침수지역, 반지하주택 등) 거주자 등에게 보다 큰 건강피해를 야기하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시책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임.

○ 현재 건강 관련 취약계층 보호 규정은 「보건의료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으로 정의하면서, 제38조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47]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보건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환경보건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환경보건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법률들은 선언적 규정 또는 기후위기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거나,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또는 응급 복

47) 동 법에 따른 “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됨.

구와 구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보호 규정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건강피해 예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노숙인[48]이나 옥외 근로자[49]를 제외하고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 규정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50]

□ 따라서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범주화하는 한편,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감시·조사 체계 등과 연계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시책 마련이 가능해짐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간·계층간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는 질병관리청 고유의 업무이므로 건강영향 조사 주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4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0) 이동영, 앞의 자료. p.6.

아. 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와 통계의 관리(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통계를 수집·관리하고, 정보·통계의 수집·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의료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계 법인·기관·단체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9조(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축적・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인・기관・단체(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와 통계 수집・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 요구 및 제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통계의 수집·관리와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기후데이터(기상청), 환경데이터(환경부), 건강데이터(복지부, 질병관리청), 응급의료데이터(소방청 등), 재

난데이터(행정안전부 등), 식품데이터(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등 분야별로 분산된 정보의 통합관리 및 제공이 가능해지고, 기후요인과 건강영향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보호 대상·지역 설정 및 예측 기반 정책설계 등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기후보건 관련 온열·한랭 질환별 자료(카드뉴스·건강수칙·연구자료 등) 및 온열질환 예측정보(전국별), 연도별 질환자 통계정보 제공 등 국내외 공공기관[51]에서 제공하는 각종 건강위해요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건강위해정보, 기후보건정보, 중독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제공하기 위한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임.

<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기능	내 용
국내·외 건강위해정보 수집 및 제공서비스 구축	▪ 건강위해요인 수집·발굴하여 편의성 및 접근성을 위한 콘텐츠 구성 ▪ 중독, 기후 등 건강위해 관련 정보 연계
건강위해요인 최신 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 건강위해요인(기후, 중독 등)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 API정보, 시각자료 등의 활용을 통해 가독성 증진 실현
건강위해요인 관련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 중독, 기후 등 다양한 건강위해요인 관련 연구자료 수집·제공

자료 :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main)

○ 이와 함께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 대상 온열·한랭질환자(추정 사망자 포함) 발생 현황정보(인원, 나이, 성별, 지역 등) 수집을 위한 감시시스템을 운영 중임.

51) WHO 등 51개 공공기관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보다 질병관리청이 이미 운영 중인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사용자 편의성 유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정보·통계의 수집·관리·제공의 전문성·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기후위기 및 재난 관련 각종 정보와 통계를 수집·관리하고 있고,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질환 관련 데이터사업은 「암관리법」 제9조의2[52]에 따른 암데이터사업이 있음.

---

52) 「암관리법」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2. 암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

□ 개인정보위원회는 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처리와 관련하여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53]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며 중복입법으로 인한 법률간 충돌 및 이종 분야 간 가명정보 결합 시 적용 규정 혼란이 우려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고, 질병관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질병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므로 질병관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53)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7(적용범위)

자. 중앙·지역기후보건센터 설치·운영(안 제20조 및 제21조)

□ 안 제20조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 및 지역 기후보건센터를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0조(중앙기후보건센터)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9조에 따른 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통계 관리 사업 및 제22조에 따른 기후건강연구사업 4. 기후위기 건강영향 예방·관리에 대한 연구 5.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제21조에 따른 지역기후보건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기후위기 건강영향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후보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위탁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기후보건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중앙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기후보건센터) ①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보건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구역 내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관할 구역 내 기후위기 건강영향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4.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교육·홍보
5. 보건응급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후보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위탁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4[54]는 질병관리청장이 동 법 제37조의3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4)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기관 명칭을 중앙기후보건센터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기후건강연구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전담할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전담기관을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로 전문화·계층화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라 중앙기후보건센터로 하여금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상시적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단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를 넘어 연구 및 정책 수립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역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의 기후위기 특성과 인구 구조에 맞는 조사·평가 및 정책 수립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4는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제정안은 중앙·지역기후

보건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정'이 활용되고 있는 현행법상 유형은 ①허가·인가·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②행정업무를 대행·위탁하는 등 행정업무 부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③지원·육성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는바[55], 제정안은 행정업무 부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제4호의 '기후위기 건강영향 예방·관리에 관한 연구'는 같은 항 제3호의 '제22조에 따른 기후건강연구사업'과 유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은 같은 항 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통계 관리 사업'과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4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는 제정안에 따른 중앙기후보건센터의 업무 소관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은 지정되지 않고 있음.

55)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9. p.345.

차. 기후건강연구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안 제22조 및 제23조)

□ 안 제22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동연구사업 및 비용지원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3조는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2조(기후건강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그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기후건강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건강연구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후건강연구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감시·분석 및 평가와 이를 활용한 기후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기후건강연구사업과 기후보건 전문인력 양성은 기후위기 대응 건강영향 관리 정책의 과학적·제도적 기반임.

○ 기후건강연구사업의 경우 인과관계 규명의 복잡성, 장기적 영향의 측정 곤란, 지역별 편차 및 기후예측의 불확실성 등 방법론적 어려움에 더해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분석이나 기후건강연구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구성과를 도출하

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실시하고 공동연구, 연구비용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건강 분야의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기후보건 전문인력이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감시·분석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가진 인력임.

○ 기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역학조사관의 경우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 추진사업으로 예정되고 있는 보건응급조사의 전문인력은 안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역기후보건센터에서 교육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56]

○ 제정안은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 외 각종 조사·감시·평가·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3조는 교육, 훈련, 현장경험 등을 활용하여 기후위기 건강영향 대응을 위한 전문

---

56)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13조(역학조사)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기후보건센터) ①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보건응급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인력의 양성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안 제23조는 '전문인력 양성' 외 '관련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관련 연구·조사' 참여 등을 통한 전문역량 확보 등 연구·조사가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양성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라는 입장이나,

이와 같은 취지라 하더라도 해당 사항은 '전문인력 양성'에 포함하여 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오히려 연구·조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연구·조사'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기후위기 건강영향 및 그에 대한 예방·관리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은 질병관리청 고유의 업무이므로 주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 건강영향 및 예방·관리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및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57]

57) 보건복지부 수정의견

제정안	보건복지부 수정의견
제22조(기후건강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그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기후건강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제22조(기후건강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그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기후건강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

문 의 처
02)6788-5501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건강연구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후건강연구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삭 제 >

【참고1】	기후위기(기후변화 포함)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와 주요 내용

소관 부처	법률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함. 또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영향평가,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가 전반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기본 법적 틀을 제공함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를 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과 체계 제시를 규정
기상청 해양수산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 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규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규정
산림청	산림기본법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 규정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하도록 규정

자료 : 질병관리청

【참고2】	기후위기 관련 통계

< 최근 5년(2021～2025년) 폭염 및 한파일수 >

(단위 일)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폭염일수*	11.8	10.6	14.2	30.1	29.7
한파일수**	7.2	8.3	5.3	1.9	4.4

< 온열질환자 현황 >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376명	1,564	2,818	3,704	4,460

< 심뇌혈관계 사망자 현황(인구 10만명당) >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남성	121.1	121.5	134.7	132.1	134.7
여성	115.5	116.2	128.7	127.8	130.7

< 국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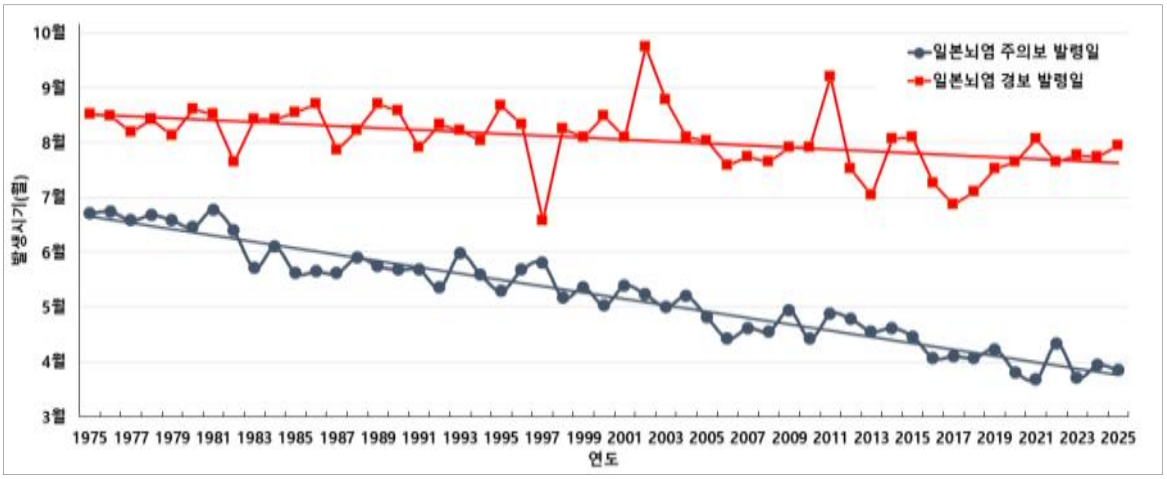

- 일본뇌염의 경우, 최근 10년간(2015~2024) 평균기온 1.4℃ 상승에 따른 매개모기 조기 출현으로 주의보·경보 발령이 각각 16일, 11일 빨라짐

< 쯔쯔가무시 감염병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 분포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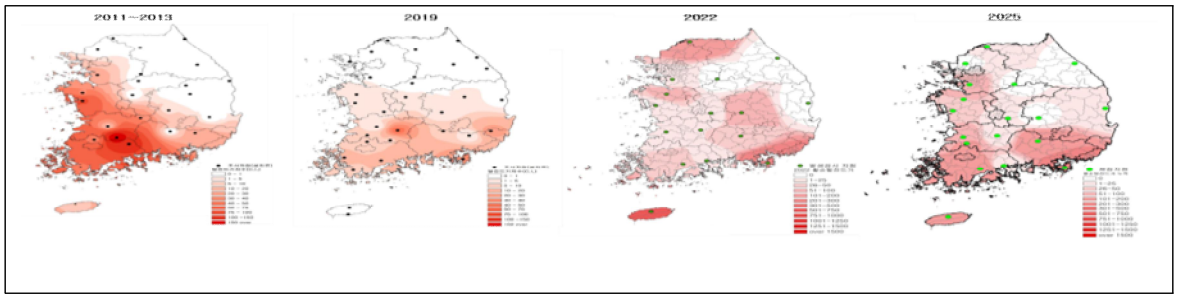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 현황('19~'25) >

연도 / 감염병명	환자 수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366	74	23	152	295	259	179
뎅기열	273	43	3	103	206	196	110
열대열말라리아	74	29	20	38	74	54	56
치쿤구니야열	16	1	-	8	13	9	9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3	1	-	3	2	-	3

자료 : 질병관리청

【참고3】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 추진개요

○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유형, 특성, 추이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 근거 마련**

*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에 근거하여 5년마다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 추진 경과

○ (1차 평가) 3개 영역 31개 지표 기후보건영향평가 시행('21 시행, '22년 결과 발표)

○ (감사원 감사)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24.4월~'24.6월) 결과 정신건강 및 기상재해 분석, 미래 예측 추가 등 평가제도 합리화

○ **(지표 발굴) 2차 기후보건 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

* 기후보건 지역지표 발굴을 위한 취약성 분석 및 타당성 연구('24.3~12, 서울대)

*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지표 개발, 평가체계 정립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25.3~'26.1, 예방의학회)

□ 주요내용

❶ 기후위기 대비 실효성 있는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 **(기후재난 대비·대응 강화)** 기후 재난 대응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해 태풍·홍수·산불 영역 추가하여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 영향 분석

○ **(평가 분야 확대)**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건강 영향 파악 감염병·만성질환·정신건강 등 지표 신설 및 확대(31→ 약 77개) 추진

* (감염병) 말라리아, 노로바이러스 급성위장병증, 수족구병 등

* (만성질환) 신장질환, 심뇌혈관질환,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

* (정신건강) 정신질환 전체 사망률, 우울증 유병률, 자살 사망률 등

○ **(정책 연관 분석)** 미래 기후보건 정책 대응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미래 예측 (~2100년) 및 기후 민감 집단에 대한 취약성 분석 도입

<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전략 및 주요 내용 >

추진 전략	주요 내용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폭염·한파대비 감시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등 감시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기후보건 취약집단 건강보호, 이상기후 건강영향 대비체계 마련 및 국외 질병 유행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민·관협력 체계 강화, 감염병 및 보건분야 국가간 협력 및 기후보건 인식제고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도·교육, 검사·조사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	건강취약성 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 및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 및 활용성 강화

자료 : 질병관리청